계약법

kyungsinpark@korea.ac.kr

계약법- 목차

- 계약의 성립
  - 청약과 승낙
  - 권리능력
  - 법규/질서 위반, 허위표시, 착오, 강박
- 이행
  - 조건
  - 불가항력
  - 채무불이행
- 채무불이행 시 구제책
  - 해제 및 해지
  - 손해배상
  - 명령 (강제집행과의 차이점)

용어정리

- 계약의 체결 – 계약효력발생 – 계약의 이행 또는 위반(불이행) –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– 계약의 만료
- 해제와 해지의 차이?
- 계약의 파기?

계약의 성립

- 청약과 승낙
  - 핵심내용이 들어 있어야 함
  - 내용이 같아야 함
  - 교차청약의 효력?
  - 계약 서명 잘하기 - 먼저? 나중에?
  - 서면계약의 필요성?
- 법규/질서 위반, 허위표시(사기), 착오, 강박
- 약관 – 일대 다수 – 근로계약은 면제
  - 면책조항의 금지
  - 과도한 손해배상예정액/위약벌 금지
- “협의”와 “합의”

계약의 성립-2

- 계약체결행위자의 능력
- 미성년자, 피후견인 – 취소가능 (법정대리인의 동의부재?)
- 법인의 대리
  - 명시적 위임
  - 암묵적 위임
  - 표현대리 – 위임은 없으나 위임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외관의 허용
  - 실무적 대응: ' 표현대리'권을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라

계약의 이행

- 조건
  - 정지조건:
    - 예) “계약의 효력은 문화부용역 낙찰이 되어야 발생한다”는 계약체결후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위반인가?
  - 해제조건:
    - 예) “계약의 효력은 문화부용역 낙찰이 되지 않으면 해제된다”
  -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?

계약의 이행 2

- 불능 → 해제 또는 해지
- 불가항력
-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어야 하는가?

계약의 이행 3

- 조건, 불능 따져본 이후 → 이행 아니면 불이행(위반)?
- 고의나 과실의 문제?

그러나,

- 과실상계 – 피해최소화의 의무
- 최고의 의무

계약위반시 구제책

- (채무)불이행 → 구제
  - 해제/해지권 – 해지/해제를 잘못하면? 예) 부당해고
  - 손해배상
    - 과실책임원칙 – 과실책임조항 필요?
    - 차액설
      - 해지: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. . .
      - 해제: 상대방과의 계약이 없었더라면. . .
    - 위약벌과 손해배상예정액 – 합리적인 선까지 인정
    -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– 예) 공연계약 위반시 – 예매권 환불 v. 예상되는 예매권 보상
    - 정신적 손해 인정
    - 손해배상판결문의 집행 → 압류 → 경매 (계좌번호 확보의 중요성)
  - 법원명령 – 이행명령 – 이행강제금

제3자관련

- 제3자수익자계약 – A-B계약의 위반에 대해 C가 손배제기할 수 있다!
- 채권/채무의 양도 – 상대방에 불이익이 없는 한 허용됨
- 위임
- 경개

문화예술분야 계약유형

- 물물유통계약 (?)
- 에이전시계약
- 라이선스계약
  -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허락하는 계약
  - 예) 영화상영계약, 출판계약, 웹툰연재계약
- 용역계약
  - 개발계약: 용역의 부산물로 지재권이 발생하는 계약
  - 근로계약: 노동의 시간/장소/방법을 통제받는 계약
    - 용역부산물 → 업무상 창작물 → 사용자소유
- 투자계약서

앞으로 다룰 계약들

- 창작물 라이선스 계약서
- 근로계약서 → 보통 라이선스 필요 없음
- 개발용역계약서 → 라이선스 조항 필요

가계약

- 가계약: 의향서, MOU, 양해각서, 딜메모
  - 본계약내용은 보통 첨부물로.
  - 제목중요치 않고 본문에서 의무자체를 ‘선의의 협상’의무로 격하시켜야 “가계약”의 효과를 갖게 됨.
  - 독점협상, 비밀유지 → 기속력이 있다.